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중복관할 규정〉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4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기관 의견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6. 10.
3.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대전·대구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 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큼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광주·대전·대구회생법원 설치와 함께 고등법원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도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대전·대구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 경상북도는 대구회생법원에 회

생 및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제12항 및 제13항, 제14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①대전고등법원 관할 구역(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회생사건·간이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이하 ‘회생사건등’)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대구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회생사건등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③광주고등법원 관할 구역(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회생사건등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경합적 관할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① ~ ⑪ (생략) <u><신설></u>	제3조(재판관할) ① ~ ⑪ (현행과 같음)
<u><신설></u>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u>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u>
<u><신설></u>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u>경상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설>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항부터 제3조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가. 현행법상 회생법원의 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②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업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③위 두 사항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¹⁾의 관할에 전속하고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으며(제3조제1항),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에 한정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

1)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음(제3조제2항)²⁾.

다만, 2016년 12월 동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되었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경합관할을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4항)³⁾.

한편, 2022년 12월 부산·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년 3월 시행)과 함께 동 법률을 개정하여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부산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였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4472호, 2016.12.27.>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재판관할)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에 따른 회생법원의 관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

회생 법원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동 법 제3조에 따른 회생법원의 실제 관할구역
서 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법 §3①)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춘천시(법 §3②, 회생사건·파산사건에 한정) ※ 채권자 300인 이상, 채무액 500억원 이상의 사건(법 §3④)
수 원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 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 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 군포시·여주시·양평군	좌 동(법 §3①)
부 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법 §3①),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법 §3⑪)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동 개정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호)의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이들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중복관할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가 실효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법원행정처는 부산회생법원 설치 및 중복관할 허용 이후 부산회생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울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등의 사건 접수 건수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울산과 창원 권역의 국민들이 각 지방법원이 아닌 부산회생법원의 이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함.

< 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중복관할 인정 이후 사건 접수 추이 >

(단위 : 건수)

법원	연도	회생 합의	법인 파산	회생 단독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책	합계
부산 회생 법원	2022	17	35	25	3,604	1,896	1,837	7,414
	2023	57	49	45	6,912	2,438	2,351	11,852
	증감률	235.3%	40.0%	80.0%	91.8%	28.6%	28.0%	59.9%
울산 지방 법원	2022	5	10	6	2,415	688	641	3,765
	2023	7	10	5	2,566	636	593	3,817
	증감률	40.0%	0.0%	-16.7%	6.3%	-7.6%	-7.5%	1.4%
창원 지방 법원	2022	34	15	28	3,390	2,313	2,254	8,034
	2023	34	22	21	3,128	1,943	1,896	7,044
	증감률	0.0%	46.7%	-25.0%	-7.7%	-16.0%	-15.9%	-12.3%

주 : 2023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통계임

자료 : 법원행정처

즉, 개정안의 신설 회생법원의 중복관할 범위는 신설 회생법원 인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 등의 신청 수요, 인근 지역과 신설 회생법원의 접근성, 신설 회생법원의 인적·물적 구성과 사건 처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영역이라고 보임.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호)은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을 대전광역시로, 대구회

생법원의 관할을 대구광역시로,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을 광주광역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생법원의 관할이 지방법원의 관할에 맞추어 수정될 경우 중복관할에서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임⁴⁾.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도산전문법원 설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 사건 규모 등으로 인해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는 점, 도산전문법원의 중복 관할 인정을 통해 신청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도산절차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국민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과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고려할 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호)과 연계하여 개정안 관할구역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은 그 관할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으로 두고 있으므로 대전회생법원의 관할도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 경우 개정안 제3조제12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삭제)로, 후술하는 법원행정처 의견과 동일함.
회생사건등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관할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대전광역시 주민들은 대전회생법원에 회생사건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주민들은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사건등을 신청해야 함.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3조제12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고, 제3조제13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제3조제14항 중 전라남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함⁵⁾.

문 의 처

02)6788-5058

5)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호)과 관련하여 대진회생법원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를 포함하고,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경상북도를 포함하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구역에 전라남도를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